

설계공모 서면질의 답변서

- B-1 공동이용시설부지는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2조 (실시계획의 작성) 제1항 1호 및 4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산업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은 불가하며 C-7은 주차장 부지로 사업대상 부지에서 제외

제12조(실시계획의 작성) ①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공간배분

가.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한 금융, 의료, 주차장, 창고, 운동장, 종업원기숙사,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 건축물(관리사무실, 공동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근로자 수 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간을 배분하여 계획함.

나.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, 종업원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,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·운영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2. 업종별 배치 (생략)

3. 경관보전 (생략)

4. 지원시설의 설치

가.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시기를 결정

나.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설치하도록 계획

- B-1 공동이용시설부지에는 사무동을, A-9, A-13, A-17 산업시설용지에는 작업동을 건축하고, 사무동과 작업동은 통로로 연결

《사업대상부지 변경》

- 당초 : 9,061.00m²

(A-9 : 2,437.00m², A-13 : 2,438.00m², A-17 : 2,206.00m², B-1 : 1,111m², C-7 : 869m²)

- 변경 : 8,192.00m²

(A-9 : 2,437.00m², A-13 : 2,438.00m², A-17 : 2,206.00m², B-1 : 1,111m²)

《건물배치》

B-1 (사무동 건축)	A-17 (작업동 건축)	A-13 (작업동 건축)
C-7 (사업 부지에서 제외)		
* C-7 주차장은 행정 에서 조성할 계획임		A-9 (작업동 건축)